



TECHNICAL INFORMATION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618-814
Republic of Korea

Phone : +82-70-8799-8331
Fax : +82-70-8799-8339
E-mail : convention@krs.co.kr
Person in charge: JEON, Gyejeong

No : 2022-IMO-03
Date : 8 August 2022

제목 : 최신 IMO 성능기준에 적합한 EPIRB, VDR 및 S-VDR 출시 지연 관련 조치사항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Resolution MSC.471(101), 493(104) 및 494(104) 채택을 통해 선박에 설치되는 EPIRB(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VDR(Voyage Data Recorder) 및 S-VDR(Simplified Voyage Data Recorder) 장비의 IMO 성능기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동 결의서에 따르면 개정되는 성능기준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선박에 설치되는 장비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이에 따라 승인된 제품이 시중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선급에서는 본 기술정보를 통해, 상기 성능기준에 적합한 신규 제품을 본선에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IMO 성능기준 주요 개정 사항 및 적용 일자

1.1 EPIRB 성능기준 : Resolution MSC.471(101)

- GNSS(GPS 등) 수신기 및 AIS 위치신호 송신기 추가 요구

1.2 VDR 성능기준 : Resolution MSC.494(104)

- VDR의 최종기록매체 중 하나인 자유부양기록매체(Float-free recording medium)는 새로운 EPIRB 성능기준인 Res.MSC.471(101)에 적합한 자유부양 형태의 보호된 캡슐(float-free type protective capsule)에 설치되어야 함

1.3 S-VDR 성능기준 : Resolution MSC.493(104)

- S-VDR의 최종기록매체는 고정식 또는 자유부양 형태의 보호된 캡슐에 설치되어야 하며, 만일 자유부양 형태의 보호된 캡슐일 경우 새로운 EPIRB 성능기준인 Res.MSC.471(101)에 적합해야 함

1.4 상기 개정된 성능기준의 적용일자 : 2022년 7월 1일 이후 선박에 설치되는 장비에 적용

2. 최신 IMO 성능기준에 적합한 장비의 출시 지연에 따른 조치사항

- 2.1 본선에 기 설치된 EPIRB 또는 VDR/S-VDR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교체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장비의 사용을 유지
- 2.2 2022.7.1일 이후 EPIRB 또는 VDR/S-VDR의 신규/교체 설치가 필요하나 개정된 IMO 성능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구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사항을 적용하여 이전 성능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교체 설치 시에는 선급 임시검사가 요구됨
- .1 해당 선박의 관련 기국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 .2 관련 기국 지침이 없는 경우, IACS 통일해석인 IACS UI SC 295(EPIRB 해당) 또는 IACS UI SC 261/Rev.1(VDR 해당)이 적용될 수 있음
 - 선박의 건조계약일이 2022.7.1 전인 선박은, 장비의 계약상 납품일자(contractual delivery date) 또는 계약상 납품일자가 없는 경우 실제 장비의 납품일자(actual delivery date)가 2022.7.1 전이라면 이전 성능기준에 적합한 장비 설치 가능
 - .3 상기 2.2.1 및 2.2.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주/운항자는 기국에 Case by Case로 문의하여 이전 성능기준에 적합한 장비 설치에 대한 허가를 득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기국 지침을 따라야 함
 - 선박의 건조계약일이 2022.7.1 이후이거나, 건조계약일이 2022.7.1 전이라 하더라도 장비의 계약상 납품일자 또는 실제 납품일자가 2022.7.1 이후인 선박이 해당됨
 - 기국에 요청 시, 본선의 현재 상황 및 신규 IMO 성능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설치할 수 없는 사유를 기술한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2.3 상기 2.2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경우, 해당 장비가 본선에 설치되어 있는 한, 근거가 되는 관련 증빙 자료를 본선에 보관해야 함(PSC 수검 등에 대비) [끝]

* 유첨 : Res.MSC.471(101), Res.MSC.493(104), Res.MSC.494(104), IACS UI SC 295 및 IACS UI SC 261/Rev.1

* 배부처 : 모든 검사원, 선주, 관련 업계

Disclaimer :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